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든 도서 할인율 15% 이내로 제한 개정법률 공포…6개월 후인 11월 시행

최재천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지난 4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개정안은 5월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고, 6개월 경과 후인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로 확대된다. 또한 도서 할인율은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되며,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특히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변경해 변경된 정가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도서정가제는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에도 적용된다.

신간 할인 정가의 10%로 제한

최재천 의원이 발의(2013. 1. 9.)한 개정안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수정안)’은 할인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당초 개정안은 ▲최대 19%까지인 현행 신간 도서 할인율 상한을 10%로 제한하고 ▲신간·구간 구분을 없애 현행 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 모두 포함하며 ▲도서관 판매 간행물과 실용도서·학습참고서에도 정가제를 적

용하는 것을 담고 있었다.

특히 할인율에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온·오프라인 서점 간의 이견이 팽팽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의 중재를 통해 출판계·유통업계·소비자단체가 지난 2월 25일 모여 ‘도서정가제 확대 개정 법안을 위한 협약’을 맺고 합의한 바 있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10% 이내에서의 직간접 할인을 허용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를 15% 이내로 완화했다.

‘도서정가제 확대 개정 법안을 위한 협약’의 주요 콜자는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모든 경제적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만 허용 ▲실용서와 학습참고서 || (초등학생용)의 도서정가제 적용 ▲도서관 구매 간행물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구간 도서의 도서정가제 적용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와 할인율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이다.



정부 및 출판계는 이번 개정법안의 통과로 예외 대상이 많아 과도한 할인 판매 등으로 도서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던 출판 유통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문학도서가 실용도서로 둔갑해 할인, 유통되거나 구간 유통 비율이 높아 새로운 창작도서의 유통이 저해되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저작자의 창작의욕 고취 ▲양질의 출판 환경 조성 ▲다양한 도서 접근 및 선택권 보장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일부 존재하면서 이를 보완할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우선 초등학생 학습참고서의 정가제 적용으로 가중되는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출판계와 협력해 가격이 안정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관에 판매되는 간행물에 정가제가 적용되는 만큼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대를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는 동시에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구매하는 도서에도 정가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튼실한 출판 유통 체계를 정립하고 동네서점 을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인 완전 정가제 정착에는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으나, 출판·서점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진일보한 것이다”라며 “도서의 가격 현실화, 출판계와 서점계의 공급률 조정 등을

위해 관련 업계가 협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출협은 진일보한 이번 개정안에 이어 여러 관련 단체와 협력해 완전정가제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定價)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을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① ----- -----〈후단 삭제〉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 표시, 판매 및 할인의 범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도래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235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법률 제27조의3(별첨) (생 략) 제27조의3(양별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6. · 7. (생 략) ② (생 략)
법률 제1235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법률 제27조의3(별첨) (현행 제27조의2와 같음) 제27조의4(양별규정) ----- 제28조(과태료) ① ----- 1.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 제1항 또는 제2항 ----- ----- 5의2.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 ----- ----- 6. · 7. (생 략) ② (생 략)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 표시, 판매 및 할인의 범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도래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235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법률 제27조의3(별첨) (현행 제27조의2와 같음) 제27조의3(양별규정) ----- 제28조(과태료) ① ----- 1.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 제1항 또는 제2항 ----- ----- 5의2.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 ----- ----- 6. · 7. (생 략) ② (생 략)
법률 제1235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법률 제27조의3(별첨) (현행 제27조의2와 같음) 제27조의4(양별규정) ----- 제28조(과태료) ① ----- 1.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 제1항 또는 제2항 ----- ----- 5의2.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 ----- ----- 6. · 7. (생 략) ② (생 략)	법률 제1235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법률 제27조의3(별첨) (현행 제27조의2와 같음) 제27조의4(양별규정) ----- 제28조(과태료) ① ----- 1.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 제1항 또는 제2항 ----- ----- 5의2.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 ----- ----- 6. · 7. (생 략) ② (생 략)